

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제255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1년 1월 18일

제안자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」에 따라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·사례관리, 가족역량강화, 홍보 및 네트워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「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」를 설치하고,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함.
- 나.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양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: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
- 나. 사업대상: 양천구 등록장애인 및 가족 (2020.12.기준 17,558명)
- 다. 위탁기간: 3년 (2021. 8. ~ 2024. 7.)
- 라. 위탁사무
-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일체 및 시설관리
 - 장애인가족 상담·사례관리, 가족역량강화, 긴급 돌봄서비스, 홍보 및 네트워킹 사업 운영 및 다양한 정보 제공
 -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마. 위탁방법: 민간위탁 공개모집하여 “수탁기관 선정위원회” 심사 선정
- 바. 위탁예산: 112백만원(시비 50:구비 50) (6개월)
- 사. 시설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규 모	주요시설	운영인력
양천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	양천구 신월동 581-1 외 38필지 (신월6동 복합청사 4층)	73.96㎡	사무실, 상담실 등	4명

3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가.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「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」 공간을 설치·운영하여 장애인가족의 상담·사례관리, 긴급 돌봄서비스, 가족역량강화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- 나.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안정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4. 관계법령

- 가.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동의의 얻어야 한다. 다만,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.

- 나.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

제6조(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